

## 등록기구제한분쟁해결절차 (RRDRP)

### 소개

새 gTLD 프로그램의 초기 실행 단계부터 등록기구제한분쟁해결절차(RRDRP)의 실행을 논의해 왔습니다. RRDRP의 목적은 커뮤니티 기반의 제한된 gTLD 등록기구 운영자가 gTLD 등록기구 계약 조건에 명시된 제한 범위 내에서 도메인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한 단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피해 조직이나 개인의 불만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의 필요성은 TLD의 사용을 특정 커뮤니티로 제한한다고 약속하지만 추후에 신청인이 이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지 않는 상황을 기준으로 새 gTLD 프로그램 배정 절차에서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등록기구 운영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커뮤니티나 커뮤니티에 속한 조직 또는 집단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RRDRP를 소개하는 2009년 3월 30일의 설명 문서(<http://www.icann.org/en/topics/new-gtlds/rrdrp-30may09-en.pdf>)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ICANN은 등록자 수준에서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단속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이는 (“전체 수준”에서 DNS를 조정한다는) ICANN의 사명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며 ICANN의 핵심 가치(예: ICANN의 활동을 글로벌 조정이 필요거나 조정의 혜택이 커야 하는 ICANN 사명 범위 내에 있는 사안들로 제한함으로써 인터넷으로 가능해진 창의성, 혁신 및 정보 흐름을 존중함)와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기반 도메인 자격 요건 준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 사후 위임 심사 절차인 RRDRP를 수립하면 인터넷 콘텐츠와 도메인 사용에 관한 특수한 결정으로부터 ICANN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RRDRP가 없으면 ICANN을 소집하여 자격 및 콘텐츠 제한에 관한 모호한 중간 분야에서 상당한 자원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는 ICANN의 계약 준수 책임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ICANN은 지속적으로 계약 준수 활동을 하고 모든 계약 당사자들에 대하여 계약을 실행하며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의 도입을 확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RRDRP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제한되는 TLD 내에서 적법하고 적격한 등록자들(TLD와 관련하여 약속한 제한 내용을 위반하여 등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등록 이권을 침해 받을 수 있는 등록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추가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절차는 필요 시 독립적 판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의 불만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RRDRP는 등록기구 운영을 통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실제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을 때에만 사용 및 자격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는 등록기구 운영자가 계약상 제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커뮤니티에 대하여 실제적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조치의 범위를 한정합니다. 그러면 ICANN과 등록기구 운영자 사이의 등록기구 계약에 제3의 수익자가 있다는 이론 아래 새로운 종류의 잠재적 청구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불만 제기자는 등록기구 계약의 제3의 수익자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ICANN은 등록기구 운영자와의 등록기구 계약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제3의 수익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기구 운영자는 등록기구 계약에 따라 RRDRP를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ICANN은 소송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등록기구 계약에는 특별한 상황은 제외하고 분쟁해결 패널의 판정은 ICANN과 등록기구 운영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제한 TLD의 미준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초기 불만은 InterNIC.net의 WDPRS(Whois Data Problem Report System)와 비슷한 온라인 형식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액의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면 사소한 불만 건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록기구 운영자는 불만내용 사본을 받고, 보고된 미준수 사항을 조사하고 (보장되어 있을 경우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온라인 불만 처리 방안은 현재 조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불만 제기자는 미준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불만내용을 상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상부에 보고될 경우, 독립적 분쟁 해결 패널은 등록기구 운영자가 운영하기로 합의한 등록 제한 내용을 고려하여 불만대상 등록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을 내립니다. 아래 내용은 RRDRP 실행 방식에 관한 초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 절차(안)

### 분쟁 당사자

- 분쟁 당사자는 손해를 입은 조직 또는 개인 및 gTLD 등록기구 운영자입니다. ICANN이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해당 규칙

- RRDRP 실행 규칙은 분쟁 해결 절차를 일반적으로 다루기 위한 내용입니다. RRDRP 실행을 위해 둘 이상의 공급업체가 선택될 경우, 각자는 불만 제출 시에 준수해야 할 추가적인 규칙과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최소한의 기본 규칙입니다.
- 나아가, 새 gTLD 등록기구 계약에서 등록기구 운영자는 RRDRP에 참여하고 도출된 판정의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당 또는 부정 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 언어

- 이 절차에 따른 모든 제출 서류와 진행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로 합니다.

- 다만 RRDRP 전문가 패널이 모든 관련 부분에 대한 영어 번역을 첨부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여 허용할 경우, 당사자들은 증빙문서를 원본 언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통신문 및 기한

- RRDRP 공급업체와의 모든 통신문은 반드시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개시 일자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통지나 기타 통신문은 전송한 날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한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통지나 기타 통신문은 발송한 날짜에 전송, 작성 또는 송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절차에서 기한 계산을 위한 목적상, 기간은 통지나 기타 통신문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 당사자 적격

- 커뮤니티 기준으로 제한된 gTLD 등록기구 운영자가 등록기구 계약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은 조직 또는 개인이 불만 제기자라고 주장하는 불만 사항을 제삼자가 RRDRP 공급업체에게 제출하면 강제적 행정절차가 시작됩니다.
- 지정된 커뮤니티와 관련되어 있는 설립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커뮤니티 이의제기를 접수할 자격이 있습니다. “정의된 커뮤니티”는 반드시 이의 대상 신청의 gTLD 문자열과 관련된 커뮤니티이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클레임의 당사자 적격을 확보하려면 이의 제기자가 반드시 두 가지 사항, 즉 수립된 기관이고 제한된 모집단을 구성하는 지정된 커뮤니티와 지속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표준

- 클레임이 성공적으로 처리되려면, 클레임 내용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의 제기자가 제기한 커뮤니티가 지정된 커뮤니티임.
  - 제기된 커뮤니티와 gTLD 라벨 또는 문자열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음.
  - TLD 운영자가 계약상 커뮤니티 기반 제한 조건을 위반하였음.

- 불만 제기자와 이의 제기자가 지목한 커뮤니티에 측정 가능한 손해가 있음.

## 불만

- **제출:**

불만 사항은 전자식으로 제출합니다. 기술적 준수 여부 심사가 완료되면, RRDRP 공급업체는 그 내용을 전자식으로 하드 카피나 팩스 통지 형식으로 등록기구 계약에 명시된 주소로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교부합니다.

- **내용:**

- 불만 제기자의 이름, 연락처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포함) 및 불만 제기자가 알고 있는 현재 등록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 불만 제기자를 위해 대리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의 이름, 연락처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포함).
- 분쟁 성격에 대한 설명 –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등록기구 운영자가 준수하지 않은 등록기구 계약의 특정 제한 사항
  - 등록기구 운영자가 파악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불만 제기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
- 불만제기 절차를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시작하지 않는다는 진술.
- 불만 내용은 첨부자료를 포함하여 5,000단어 또는 20페이지 중에서 적은 분량으로 제한됩니다.
- 증빙 문서는 불만 사항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불만 제기자는 불만 사항을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RRDRP 공급업체 규칙에 따라 환급 불가능한 소정의 접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RRDRP가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불만 사항은 기득권을 침해 없이 기각됩니다.

## 불만 사항의 행정적 심사

- 모든 불만 사항은 해당 RRDRP 공급업체가 지정한 패널 위원들이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불만 제기자가 구제를 요청할 자격이 있는지와 절차상 규칙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합니다.

- 불만 제기자가 절차상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RRDRP** 공급업체가 판단하면, 불만 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절차가 진행됩니다. 불만 제기자가 절차상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RRDRP** 공급업체가 판단하면, 해당 불만 사항은 기각되고 처리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만 이것이 불만 제기자가 절차상 규칙을 준수하여 새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접수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이의에 대한 응답

- **RRDRP** 공급업체는 불만 사항을 관리합니다. 등록기구 운영자는 각 불만에 대한 응답을 제출합니다. 응답은 불만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됩니다. **RRDRP** 공급업체가 송부한 서면 자료가 등록기구 운영자의 최종 알려진 주소에서 수신된 것으로 확인되면, 교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 응답은 불만 제기자의 제출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등록기구 운영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및 불만 사항의 진술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응답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RRDRP** 공급업체에 제출해야 하고, 불만 제기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식 형태로 그 내용을 교부해야 합니다. 제출 시에 접수 수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만 주장이 인정될 것입니다.
- 등록기구 운영자가 불만에 응답하지 않으면, 불이행으로 간주되며 불만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이행 상황의 경우, **RRDRP** 공급업체는 적절한 구제책을 판정합니다.
- **RRDRP** 공급업체가 불이행 발견사실을 무시하는 제한적 권리를 수립할 것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행 발견사실을 무시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없을 때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문가

- **RRDRP** 공급업체는 응답 수신일부터 30일 이내에 한 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지명해야 합니다.
- 전문가는 사후 위임 과제의 당사자들과는 관련이 없는 독립적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개 업체 이상이 선정될 경우) 각 **RRDRP** 공급업체는 전문가의 독립성 확인 및 교체 절차 등 그러한 독립성을 요구하는 채택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비용

- RRDRP 공급업체는 해당 RRDRP 공급업체 규칙에 따라 이 절차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결정합니다. 그러한 비용은 RRDRP 공급업체의 관리 수수료 및 전문가에게 소요되는 비용에 총당됩니다.
- RRDRP 공급업체는 처리절차 비용을 추산하고, 불만 제기자와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비용 전액을 선금금으로 납입하도록 요구합니다. 접수 수수료는 비용 선금금으로 대변에 기입됩니다. 처리절차 종료 시 승소한 당사자는 비용 선금금을 환불 받습니다.

## 증거개시/증거

- 신속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분쟁 해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거개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전문가는 당사자에게 추가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는 당사자들이 필요한 추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짧은 제출 기한을 지정해야 합니다.

## 공청회

- RRDRP에 근거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공청회 없이 해결합니다.
- 전문가는 자체 재량 하에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가는 서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공청회 없이 판정을 내린다고 추정합니다.
- 공청회 개최 요구가 승인될 경우, 가능하면 화상회의나 원격회의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능하지 않을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전문가가 공청회 장소를 선택합니다.
-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청회는 하루를 초과하여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분쟁해결 처리절차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 입증 책임

- 불만 제기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책임은 우세한 증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구제책

- 계약상 제한을 위반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사람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구제책은 계약상 제한을 위반하여 등록한 것을 삭제하는 형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 전문가는 자체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집행 도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금전적 제재
  - 위반내용을 교정하기 전까지 gTLD에 새 도메인 이름 등록의 수용을 정지함. 또는 특수 상황에서,
  - 등록기구 계약의 종료를 규정함.
- 전문가는 적절한 구제책을 판정할 때 불만 제기자에 대한 지속적 손해를 고려합니다.

## 전문가의 판정

- RRDRP 공급업체와 전문가는 전문가 선임일부터 45일 이내에 전문가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전문가는 서면으로 판정합니다. 판정은 불만 제기자가 판정의 원인을 사실적으로 파악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판정의 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정 내용은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며 RRDRP 공급업체의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해야 합니다.
- 판정 내용은 해당 구제책의 발효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지만, 비용 및 수수료는 전문가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법원 및 기타 행정 소송의 활용 가능성

- RRDRP는 배타적인 절차로 수립된 것이 아니며, 개인들이 법원에서 구제책을 모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 과정을 통하여 비공식적 협상 및/또는 중재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지만 이는 요구사항이 아니며, 그러한 해결 협상 행위 자체가 처리절차상 기한을 연기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